

##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 삭제에 관한 권리<sup>1)</sup>

### 1. 사실관계와 경과

(1) 청구인은 2015년에 관할 세무서에 자신의 동의 없이 수집된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고지를 통해 해당 요청을 거절하였다.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연방재정법원은 2016. 11. 3. 판결을 통해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해당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연방재정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니더외스터라이히 주(州)의 범죄청<sup>2)</sup>(이하 범죄청)은 2007년에 불법 매춘 혐의로 청구인을 비밀리에 수사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청은 관할 세무서에 청구인이 타인을 대상으로 사적인 서비스(private Dienstleistung)를 제공하였다는 기록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는 탈세 혐의로 청구인에 대한 외견심사(Außenprüfung)를 시행하였고, 청구인의 예상 수입과 지출을 산정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영업이익을 산출한 뒤 이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였다.

해당 소득세 부과 고지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는 2008. 12. 15. 인용되었고, 소득세 부과는 취소되었다. 관할 세무서는 소득세 부과 취소에 대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최고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shof)은 2012. 1. 25. 결정을 통해 이를 기각하였다. 청구인은 정보보호법 2000 제27조 제1항 제2호<sup>3)</sup>에 따라 그녀에 관한 정보, 특히 성생활에 관한 정보를 관할 세무서가 삭

1) 2017년 12월 12일자 사건번호 E 3249/2016-11.

2) Landeskriminalamt Niederösterreich, LKA NÖ.

3) 정보보호법 2000 제27조 제1항 제2호

모든 위임자는 해당인의 이유 있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확하거나 이 연방법 규정에 반하여

제해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은 정보보호위원회에 자신의 정보삭제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의제기(Beschwerde)를 하였으나 정보보호위원회는 청구인의 정보가 정보보호법상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아서 심사대상이 아니라며 각하하였다.

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VfSlg. 19.937/2014 판결을 통해 정보보호법 2000에 따른 정보삭제권이 컴퓨터로 문서화된 정보에만 적용되며 종이문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의 성생활에 관한 정보를 종이문서로 보관함으로써 제한되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4)에 따른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는 해당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서류의 보관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하였다.

(3) 연방재정법원은 문제된 판결의 법적 판단에서 관할 세무서가 외견심사를 통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청구인의 영업상 수입을 산정한 것은 세무서의 의무에 해당되는 일이었다고 하였다. 외견심사에서 확인된 사항은 수입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일 뿐이며 정보보호법 2000상의 정보가 아닌 서류봉치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종이문서와 전산처리되어 저장된 정보는 단지 조세확정과 이후에 있을 수도 있는 소송에만 사용될 것이라고 하였다. 해당 정보는 직무상의 비밀엄수 의무 및 조세법상의 기밀유지에 해당되며, 서류의 열람 역시 매우 제한된 요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

처리된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4) 유럽인권협약 제8조

- (1) 모든 사람은 그의 사생활, 가정생활, 주거 및 통신을 존중받을 권리를 가진다.
- (2) 법률에 합치되고,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또는 국가의 경제적 복리, 질서유지와 범죄의 방지, 보건 및 도덕의 보호,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 및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어떠한 공공당국의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된다.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공공의 이익이 청구인의 사적 이익에 우선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영구 중지(ewiges Ruhen)되었다. 같은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직권남용으로 형사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관할 세무서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의 소송도 염두에 두고 있다.

(4)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자신의 권리가 연방재정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2. 주문

청구인은 문제된 연방재정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따라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해당 결정은 파기한다.

## 3. 이유

(1)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은, 이러한 제한을 가한 행정법원<sup>5)</sup>의 결정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반하는 법규정에 기초하는 경우 또는 행정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 헌법상 문제없는 법적 근거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적용한 경우에 헌법에 위배된다. 후자의 경우는 행정법원이 무법상태와 동일선상에 놓일 정도의 오류를 범하거나 적용한 법규정을 헌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오인하는 중대한

---

5) 오스트리아에서는 최고행정법원(Verwaltungsgerichtshof) 산하에 11개의 행정법원이 존재하며, 여기에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gericht)이 포함된다. 오스트리아 행정재판에 대해서는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5호 국외통신원소식 <오스트리아 행정재판의 개혁과 난민재판> 참조.

오류를 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sup>6)</sup>

(2) 연방재정법원은 후자와 같은 오류를 범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청구에 대해 판단한 예전 VfSlg. 19.937/2014 판결에서 종이문서 정보의 삭제 가능성에 관해 분석한 바 있다.

1) 헌법재판소는 연방재정법원과 마찬가지로 전산화되지 않은 종이문서는 정보보호법 2000상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관찰 세무서에 보관된 종이문서의 삭제 청구권은 정보보호법 2000으로부터 도출될 수 없다.

2) 청구인이 헌법상 보장되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로부터 정보의 삭제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VfSlg. 18.092/2007 결정에서 유럽인권협약 제8조로부터 도출되는 삭제의무는 정보보호법 2000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결정에서는 청구인의 조서에서 이름과 생년월일 및 주소를 알아 볼 수 없도록 했고, 문서번호와 범죄에 대한 언급이 검게 칠해져 있어서 조서를 인물과 관련하여(즉 청구인의 이름만으로는) 검색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문서 보관을 유럽인권협약 제8조로부터 도출되는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서는 인물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왔다.<sup>7)</sup>

---

6) VfSlg. 11.638/1988, 15.051/1997, 15.400/1999, 16.657/2002 참조.

7) EGMR 16.2.2000, Fall *Amann*, Appl. 27.798/95, newsletter 2000, 50; 4.5.2000, Fall *Rotaru*, Appl. 28341/95, newsletter 2000, 96; 18.10.2011, Fall *Kheleli*, Appl. 16.188/07, newsletter 2011, 305.

*Kheleli* 사건의 항소인은 수 년 동안 경찰의 정보색인에 ‘매춘부’로 기록되어 있었다. 항소인의 요구에 따라 제네바 경찰은 직업명을 ‘매춘부’에서 ‘재봉사’로 변경하였지만 경찰문서의 메모를 삭제하지는 않았다. 불법 매춘으로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항소인의 직업을 매춘부로 칭하는 것은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므로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침해를 확정하였다.

위의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서처럼 관할 세무서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고 삭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서 헌법상 보장하는 사생활에 대한 존중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2) 위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예전 판결에 따르면, 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유럽인권협약 제8조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해당 정보를 폐기하거나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관할 세무서 내지 연방재정법원의 과제이다.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호되는 청구인의 사생활과 정보를 계속 보관하려는 공익 사이에 형량을 하여야 한다.

(3) 연방재정법원의 의견과 달리 청구인의 종이문서 파기신청에 관한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세무서가 소득세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심사하였어야 하는지 여부가 아니다. 이 사안에서는 종이문서에 청구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그 결과가 문서를 계속 보관하려는 공익과 헌법상 보호되는 청구인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 간의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된다.

문제된 연방재정법원의 결정에서의 청구인의 이익과 공익 간의 형량은 헌

법적 관점에서 볼 때 미흡하다. 청구인이 앞으로 다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권리 방어를 위해 문서의 보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이해되기 어렵다. 연방재정법원은 결정에서 청구인이 이미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으나 해당 사건이 영구 중지되었다고 한 바 있다. 소에 대한 영구 중지는 일반적으로 원고의 실체법적 청구권의 포기를 의미<sup>8)</sup>하므로 해당 소송은 종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문서 보관은 필요가 없다. 연방재정법원의 결정에서는 형사소송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설명을 찾을 수 없다. 또한 유럽인권재판소에 입장 표명하기 위해 종이문서가 필요하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이에 대한 공익이 청구인의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서 도출되는 문서 삭제에 대한 기본법상의 이익에 비해 중요하다는 형량이 없었다. 문제된 결정에서는 그러한 소송절차가 실제로 계속 중인지 여부와, 만약 절차가 계속 중이라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이 절차에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는지와 어떤 이유에서 종이문서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었다. 단지 앞으로 그러한 소송이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청구인의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서 도출되는 사생활과 가족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의 보장에 대한 공익의 중요성을 정당화할 수 없다.

(4) 연방재정법원이 문제된 결정에서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종이문서의 보관에 대한 공익이 청구인의 문서 삭제에 대한 사익에 우선한다고 보았으므로 청구인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 유럽인권협약 제8조에 따라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

---

8) Rechberger/Simotta, Zivilprozessrecht, 2017 Rz 549 참조.